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주 전역 준수  
홍보 프로그램**

## 사업체로 연락을 하는 이유

주 전역 준수 홍보 프로그램(SCOP)에 따라 CDTFA는 정기적인 허가 및 면허 검증을 위해 대부분의 주 내 사업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의 목적

- 필요한 주 세금 및 수수료 허가와 면허의 구비 여부 확인,
- CDTFA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에 문제 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
- 방문한 사업체에 대한 CDTFA 기록이 최신이며 정확한지 확인,
- 사업체에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CDTFA 담당자와의 협의, 그리고
- 세무 관련 신고 요구 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들을 교육하고, 세무 준수를 강화하며 공정한 세무 업무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허가 및 면허 검증은 감사나 기타 세무 준수 또는 집행 활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어떤 허가와 면허가 필요한가요?

상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판매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법에 따라 판매자 허가증은 사업장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수입 및 세무법 [R&TC] 섹션 6067).

CDTFA에서 관리하는 다른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도 허가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은 담배나 담배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DTFA가 사업자를 방문하면 필요한 허가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사용세 신고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구매자"는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등록하고 R&TC 섹션 6225에 따라 매년 직접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는 판매 및 사용세 목적으로 CDTFA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업체가 포함되며, 연간 사용세가 부과되는 구매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제외) 해당 구매에 부과된 사용세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소매업체에 지불되지 않았거나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 대한 본 정의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서비스 기업을 위한 의무적 사용세 등록'이라는 간행물 126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사용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온라인 가이드](#), 캘리포니아 사용세, 사용자 관련 캘리포니아 주 관련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허가 및 면허 검증 방문에서는 무슨 일이 진행됩니까?

SCOP 담당자가 사업체를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하여 주고 CDTFA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다음 담당자는 판매 허가가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허가증이 필요한데 전시되어 있지 않다면 SCOP 담당자가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CDTFA에서 발급한 추가 허가 및 면허와 지역 사업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SCOP 담당자가 귀사에 대한 CDTFA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신고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판매자 허가 또는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SCOP 담당자가 [www.cdtfa.ca.gov/services](http://www.cdtfa.ca.gov/services)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등록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은 CDTFA 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http://www.cdtfa.ca.gov/office-locations.htm). 등록은 일주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CDTFA 등록 시스템에는 사업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 시 등록해야 할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을 명시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1-800-400-7115(TTY:711)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기록의 보존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판매 및 구매 기록, 영수증, 재판매 증명서 및 일반 회계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 1698](#), 기록을 참조하세요.

## 사업자의 권리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 사업자는 특정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CDTFA 직원은 사업자와의 모든 종류의 협의 중 사업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 사업자의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중하고 신속한 서비스,
- 공정한 대우,
- 기밀 유지 및
- 정보 및 지원

## 검증 방문이나 담당자의 행동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 SCOP 담당자가 비전문적이거나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지역 SCOP 팀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서신을 보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COP 팀 사무실 목록은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taxes-and-fees/SCOP.htm#Contact](http://www.cdtfa.ca.gov/taxes-and-fees/SCOP.htm#Contact)

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CDTFA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귀하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사업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감독자 또는 관리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Field Operations Division(현장 운영 부서) 외부에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Taxpayers' Rights Advocate (납세자 권리 응호자;TRA)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권리 조언자

[www.cdtfa.ca.gov/tra](http://www.cdtfa.ca.gov/tra)

1-888-324-2798

TRA 사무소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상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를 지원합니다.

### TRA에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 자세한 내용

면허 검증 방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SCOP 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CDTFA 웹사이트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

### 이메일

[www.cdtfa.ca.gov/email](mailto:www.cdtfa.ca.gov/email)

###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711)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근무합니다.

## 세금 포탈 신고

세금 포탈 의심 사례를 신고하려면 세금 포탈 신고 핫라인 1-888-334-3300으로 연락하세요.